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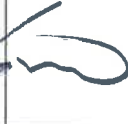


등록번호	안전건설과-
등록일자	2018. 11. .
결재일자	2018. 11. .
공개구분	비공개

주무관	담당	과장	국장	부군수	군수
		전결			
협 조					

**2018년도 지방하천(소양강) 재해예방 하상준설사업 시행 및  
하천 준설토를 이용한 골재 재생산**

**입찰실명서**

2018. 11. .

인 제 군

# 지방하천 재해예방 하상준설 사업 시행 및 준설토 매입 대상자 선정 기준

## I. 입찰개요

- 지방하천(소양강) 재해예방 하상준설사업 시행. (입찰자 본인부담)
- 준설사업으로 인한 준설토 매입.

## II. 입찰참가자격

- ※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필한자로서 골재채취업(육상, 선별·파쇄) 등록업자.
- ※ 주된 영업 소재지가 인제군 관내에 있는 업체

## III. 소요예상 물량

단위 : m<sup>3</sup>

구 분		모 래	막자갈	산출근거	비 고
계	6,259	5,007	1,252	모래80%, 막자갈20%	
기린면 서리 천1번지	6,259	5,007	1,252	모래80%, 막자갈20%	

※ 물량은 현장 여건에 의해서 변동 될 수 있음.

(하천골재 사용료기준: 모래 1,895원 막자갈 1,327원)

IV. 골재선별장소 : 준설토 일체 반출 후 선별·파쇄 신고업체 사업장.

V. 준설토 반출 기간 : 착공일로부터 20일(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)

## VI. 준설토 반출

- 가. 낙찰업체 결정 후 설계 물량에 의하여 허가 된 준설토를 반출한다.
- 나. 하천준설에 있어 공고 물량 또는 우리군의 허가량보다 허가기간 내 부족하게 준설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.
- 다. 덤프로 반출시 25.5t → 15m<sup>3</sup>, 15t → 9m<sup>3</sup> 골재량은 위와같이 통일한다.

라. 입찰방법은 하천골재 사용료 × 물량을 곱한 총액에 한하여 입찰하며, 최고가액에 준한다.

모래 80% = 1,895원/m<sup>3</sup> × 5,007m<sup>3</sup> = 9,488,265원

막자갈 20% = 1,327원/m<sup>3</sup> × 1,252m<sup>3</sup> = 1,661,404원

총 물량 = 9,488,265 + 1,661,404 = 11,149,660원 (원단위 절삭)

마. 입찰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경리부서에서 시행한다.

### Ⅶ. 사용료 정산

입찰 후 하천골재 사용료 징수 후 설계물량에 의하여 허가된 준설량 반출.

### Ⅷ. 준설토 반출 절차

입찰 후 준설 착공 신청(군청 안전건설과) ⇒ 하천골재 사용료징수 ⇒ 반출증교부 ⇒ 반출 ⇒ 감시원 확인(반출증 회수)

### Ⅸ. 기 타

#### 가. 수질오염 및 환경영향 예방조치 이행

- 0 준설토 반출시 준설장비 및 운반 등에서 유류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,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오일 웬스, 흡착포 등 유류제거 장비를 비치하고 작업
- 0 장비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는 적정용기에 수거 즉시 위탁처리 하고 노천에 방치금지.
- 0 준설토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탁을 감소하기 위한 오탁방지막(뚝) 및 오탁수 저감을 위한 저수조등의 설치.
- 0 일출 전, 일몰 후 선별 및 반출금지(야간소음방지)와 준설토 반출로 내외의 비산 먼지로 인한 오염발생을 고려 살수차 배치.

#### 나. 준설토 반출시 유의사항

0 깃발설치

구 분	모 형
1. 육 상 ①설치간격 : 50m ②규 격 : 깃대-120cm 이상 깃발-가로 45cm, 세로 30cm ③재 질 : 깃대-철재 깃발-천 또는 두꺼운 비닐	

④색 상 : 적 색	
------------	--

- 0 응급준설 사업 표시판 설치 : 소정의 규격에 의한 표시.
- 0 준설 반출로에 위험 경고판 설치.
- 0 준설토 반출 완료 후 준설사업장 주변 평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, 반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감독관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.
- 0 준설 및 반출시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비용은 입찰자 본인 부담이며 민원 및 문제 발생시 감독관청의 지시 하에 입찰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함.